

1. 개정이유

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547호, 2023. 7. 18. 공포, 2024. 7. 19. 시행)되고, 경제적·심리적·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임산부에게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(법률 제19816호, 2023. 10. 31. 공포, 2024. 7. 19. 시행)됨. 이에 따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내용을 출생통계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도입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인구동향조사의
종목·항목으로 포함 명시(제3조)

나.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
‘전염병’을 ‘감염병’으로 용어가 변경된 것을 반영(제1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기관 의견조회 실시 중

라. 기 타 : 생 략

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

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4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한 경우(이하 “직권기록”이라 한다),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사실이 기록된 경우(이하 “보호출산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(이하 “출산 후 아동보호”라 한다)는 출생에 포함한다.

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그 밖에 인구의 규모 및 구조변동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통계법」 제26조에 따라 다음”을 “다음”으로, “조사사항”을 “조사항목”으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자료제출 기한)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의 기간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출생에 관한 자료 : 출생 후 1개월 이내
2. 사망에 관한 자료 :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
3. 혼인과 이혼에 관한 자료 : 사건 성립 후 지체 없이
4. 실종선고에 관한 자료 :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

제11조 중 “판단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”을 “판단되면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전염병”을 “감염병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조사종목) ①·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3조(조사종목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한 법률」 제44조의4에 따라 직 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한 경우(이하 “직권기록”이라 한 다),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 법」 제11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출 생사실이 기록된 경우(이하 “보 호출산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제1 4조에 따라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 록된 경우(이하 “출산 후 아동 보호”라 한다)는 출생에 포함한 다.
제4조(조사항목)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출생, 사망, 혼인 및 이혼 에 대한 인구동향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4조(조사항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그 밖에 인구의 규모 및 구조 변동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

②・③ (생 략)

제5조(자료의 제출 등) ① 「통계법」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의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시(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・구의 장 또는 읍・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출생・사망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
1.・2. (생 략)

② ~ ⑥ (생 략)

제6조(자료제출 기한) ① 출생에 관한 자료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, 사망에 관한 자료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혼인과 이혼에 관한 자료는 사건 성립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실종선고에 관한 자료는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
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자료의 제출 등) ① 다음 -

----- 조사항목 -----

1.・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자료제출 기한)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의 기간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출생에 관한 자료 : 출생 후 1개월 이내
2. 사망에 관한 자료 :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
3. 혼인과 이혼에 관한 자료 : 사건 성립 후 지체 없이
4. 실종선고에 관한 자료 : 재판

	<u>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</u>
제11조(조사에 대한 관리) 통계청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으로부터 신고서, 첨부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고 질의·확인하게 할 수 있다.	제11조(조사에 대한 관리) ----- ----- ----- <u>판단되면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5조(특별조사) 통계청장은 신속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거나 천재지변, <u>전염병</u> 의 만연, 그 밖에 수해 또는 가뭄 피해 등으로 인구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과 제3조에 규정된 조사종목 중 일부를 지정하여 특별히 인구동향을 조사할 수 있다.	제15조(특별조사) ----- ----- ----- <u>감염병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